

1. 상품 종류 및 가입대상

상품종류	세액공제용	세액공제와 노후준비를 위해 근로자 개인이 개설하여 개인의 여유자금을 적립·운용	
	퇴직급여수령용	퇴직급여를 수령하기 위해 근로자 개인이 개설하여 개인의 퇴직자금을 적립·운용	
가입자격 확인서류 (*다음중 하나)	세액 공제용	자영업자	사업자등록증,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소득금액증명원, 고용보험가입확인서, 산재보험가입확인서 * 카드결제사 및 보험결제사 등 수당직 사업소득자 - 재직증명서, 위촉증명서 제출 가능 * 농림·축산·어업 등 - 농지원부, 농업인확인서,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선원부, 어업경영체등록확인서, 어업허가증(면허증), 축산업허가증(등록증), 가축사육업등록증, 포획승인서, 수렵면허증 등도 허용
		DB 또는 DC 가입자	퇴직연금제도가입사실확인서
		1년 미만 및 단시간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퇴직금제도 적용 재직근로자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직역연금 가입자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교직원, 별정우체국직원)	직역연금 가입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재직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자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 가입증명서	
	퇴직급여 수령용	퇴직급여 수령자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퇴직급여 수령 예정자	생략 가능	

2. 납입한도

납입한도	세액공제용	총 납입한도 : 연 1,800만원+ISA의 연금계좌전환금액 ■ 연금저축상품, DC, 기업형IRP, 개인형IRP 가입자부담금을 합산하여 연간 1,800만원 (타 금융기관 합산) * 실제 가입금액보다 많은 금액(법상 최고 한도)으로 한도 설정을 하는 경우 다른 금융기관 가입이 제한됨 ■ ISA계좌의 계약기간 만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전환금액의 10%(최대 300만원한도) 추가입금
	퇴직급여 수령용	퇴직급여 수령금액 이내 * 기 수령한 경우 일시금수령 후 60일 이내만 입금가능

3. 운용방법

* 타행 정기예금, 펀드, 현금성 대기자산에 투자되며, 고객의 운용지시에 의해 지정된 상품으로 운용

운용방법	정기예금	일반 정기예금과 별도로 상품제공기관별 1인당 최고 5천만원 한도 예금보호대상
	펀드	주식형 및 주식혼합형 펀드 등 위험자산에 대한 총 투자한도는 70% 초과 불가. 채권형펀드 및 채권혼합형펀드, MMF 등의 경우 운용비용 제한 없음 (일부 상품 제외)

4. 지급방법

일시금 (중도해지)	고객요청으로 해지(일반중도해지 사유)할 경우 기타소득세, 이연퇴직소득세, 연금소득세 등 제세금과 접수일 전일까지 운용/자산관리 수수료를 차감하고 지급		
연금	수령조건	세액공제용	만 55세 이상이며, 가입기간 5년 이상, 연간 연금수령액이 10만원 이상
		퇴직급여수령용	만 55세 이상, 연간 연금수령액이 10만원 이상
	수령방법	연금수령연차에 따라 연간 연금수령한도 및 최소연금수령기간이 다름 * 연금수령한도 = 연금계좌의 평가액 / (11-연금수령연차) × 120% 1) 연금수령연차가 11년차 이상인 경우는 연금수령한도 제한 없음 2) 연금수령자격요건 충족하더라도 연금수령한도 초과 인출 시 "연금외수령"으로 간주	
계약이전	개인형IRP ↔ 개인형IRP 가능 개인형IRP ↔ 연금저축 가능(단, 만 55세 이후,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퇴직금재원은 즉시), 전액이체)		

5. 세제혜택 및 세금부과

세제혜택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액)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연금저축 합산)		공제율 (지방소득세 포함)
	4.5천만원(5.5천만원)이하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16.5%
	4.5천만원(5.5천만원)초과				13.2%
세금	운용재원 및 인출방법에 따라 과세방법이 다름				
	소득재원	연금수령 (연금수령한도 내)			연금외수령 (연금수령한도초과, 일시금해지)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부담금	비과세			비과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부담금 및 운용수익 ^{주1)}	수령연령	만 70세 미만	5.5%	기타소득세 ^{주2)} (지방세 포함 16.5%)
			만 70세 이상~80세 미만	4.4%	
만 80세 이상			3.3%		
퇴직급여	실제수령연차	10년 이하	이연퇴직소득세 × 70%	이연퇴직소득세	
		10년 초과	이연퇴직소득세 × 60%		
^{주1)} 연금수령 시 시작연금 수령액과 합산하여 연간 1,500만원 초과 시 종합소득 신고 대상 또는 16.5% 분리과세 적용, 나머지는 분리과세로 종결 ^{주2)} 연금수령한도 초과 시 납부하는 기타소득세는 납입 시의 세제혜택보다 크거나 같음					



6. 중도인출 및 담보대출

IRP계좌는 연금수령자격이 되지 않을 경우, 또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적립금을 부분인출 할 수 없으며 계좌해지만 가능

유형	사유	
	담보대출	중도인출
가능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가능	가능	무주택자인 가입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 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 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한 사업장에서 1회로 한정)
가능	가능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이 6개월 이상 요양을 필요로 하는 질병 부상에 대한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중도인출은 가입자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천분의 125를 초과하여 의료비를 부담하는 경우 가능)
가능	가능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가능	불가	본인, 배우자 및 부양가족의 대학등록금, 혼례비 및 장례비를 가입자가 부담하는 경우
가능	불가	사업주의 휴업실시로 근로자의 임금이 감소한 경우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와 요건에 해당 하는 경우
불가	가능	중도인출을 신청한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가입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불가	가능	퇴직연금담보대출을 받은 가입자가 그 대출 원리금 상환하기 위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1. 중도인출 시 세율은 인출사유에 따라 적용
 세액공제를 받은 금액 및 운용수익은 중도해지 또는 중도인출 시 기타소득세(16.5%)가 부과되며, 수령금액이 원금보다 적을 수 있음. 다만 부득이한 사유 해지 시 연금소득세율(3.3%~5.5%)로 분리과세

2. 부득이한 사유 해지(사유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
 ① 천재지변, ② 가입자의 사망 또는 해외이주 주, ③ 가입자(부양가족)이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경우 주, ④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 제1항 제2호의 재난으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피해를 입은 경우 주, ⑤ 가입자의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은 경우, ⑥ 연금계좌 취급자의 영업정지, 영업인 허가의 취소, 해산결의 또는 파산선고
 *주) 퇴직금을 입금한 날로부터 3년 이후 해외이주의 경우에 한함
 *주2) ③, ④ 경우 한도 적용 [의료비 한도 : 기본 200만원 + (가입자 본인의 휴직·휴업월수×150만원) + 의료실비] → 부득이한 사유 발생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신청

3. 담보대출 한도 : 당행 내 적립금평가금액의 1/2 범위 내에서 최고 5천만원까지, 자금용도에 필요한 금액초과 불가
 (단, 임금감소 또는 재난으로 입은 가입자의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가 정해진 경우는 그에 따름)

7. 수수료

종류	운용관리수수료	적립금 운용 현황에 관한 기록·보관·통지, 적립금 운용방법에 관한 정보 제공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받는 수수료					
	자산관리수수료	신탁재산의 운용·보관, 신탁금의 지급, 원천징수의무 이행 등에 따른 대가로 받는 수수료					
부과 방법	처음 입금하신 날(계약일)을 기준으로 다음해 동일한 날(계약응당일)에 자산에서 자동 차감되어 수취를 하는 후취 방식						
계산 방식	(계약일 또는 직전 계약응당일로부터 해당 계약응당일 전일까지의 적립금자산평가액 평잔) X (계약응당일 전일의 적립금 자산평가액에 해당되는 수수료율) X (1-장기계약할인율) X 일수/365						
수수료율(%)	수수료구분	운용관리수수료율(%)	자산관리수수료율(%)		합계(%)		
	적립금 자산평가액	퇴직금	개인부담금	퇴직금	개인부담금	퇴직금	개인부담금
	1억원 미만	0.12 (0.12)	0.07 (0.02)	0.25 (0.25)	0.20 (0.20)	0.37 (0.37)	0.27 (0.22)
	1억원 이상	0.12 (0.12)	0.06 (0.02)	0.23 (0.23)	0.18 (0.18)	0.35 (0.35)	0.24 (0.20)
<p>1. ()내의 수수료율은 농협인터넷뱅킹, NH스마트뱅킹을 통한 계약체결 시 수수료율임</p> <p>2. 장기계약할인율 : 2차년도 10%, 3차년도 12%, 4~6차년도 15%, 7~9차년도 18%, 10차년도 이후 20%</p> <p>3. 수수료 추가 할인 : 수수료 계산기준일 현재 만 40세 이하 고객 운용관리수수료 20% 할인</p> <p>4. 수수료 면제 ① 연금 개시 신청고객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② 펀드운용금액 운용관리수수료 면제, ③ 계약 4차년도 이상이고 누적수익* "0"이하일 때 운용관리·자산관리수수료 면제, ④ 개인형IRP 사전지정 운용방법(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제외) 포트폴리오의 운용수익률이 기준지표대비 동일하거나 미달성과(운용수익률≤기준지표)를 달성한 경우에는 해당 포트폴리오운용방법의 적립금 평균잔액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 면제(12개월이상 운용중일 경우 적용) *누적수익 = 적립금자산평가액 - 차감예정수수료 - 부담금 납입액 + 인출액 자세한 계산방법은 운용관리 및 자산관리계약 부속합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p>							



7. 수수료

개인형IRP 사전지정 운용방법 운용관리수수료 부과기준

- 개인형IRP 사전지정 운용방법(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제외)에 대한 운용관리수수료는 운용손익을 고려한 수수료(운용손익수수료*)부과기준을 적용
 - *운용손익수수료란 운용손익과 관련된 수수료 부과 시 운용손익을 연동하는 것으로 기본수수료와 손익수수료를 합산하여 산출
 - 기본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손익(운용성과)과 상관없이 산정하는 수수료를 말함
 - 손익수수료 : 적립금의 운용손익(운용성과)에 따라 산정하는 수수료를 말함
- 운용손익수수료 적용대상 : 수수료발생일 기준 동일한 사전지정 운용방법(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제외)을 12개월 이상 운용중인 고객
- 운용손익수수료 계산방식
 - 운용손익수수료는 운용 중인 사전지정 운용방법(초저위험 포트폴리오 제외)의 운용수익률⁽¹⁾과 사전지정 운용방법별 기준지표⁽²⁾를 비교하여 산출
(단, 운용수익률이 0보다 작을 경우에는 기준지표와 상관없이 운용손익 수수료율 0% 적용)

기준지표 대비 성과구간	일시부담금 수수료율(연)	개인부담금 수수료율(연)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초과 성과(운용수익률 > 기준지표)	기본 운용관리수수료율과 동일		
동일하거나 미달 성과(운용수익률 ≤ 기준지표)	0%		

수수료율

- (1) 운용수익률 : 퇴직연금감축규정 시행세칙 별표1의 적립금 운용수익률 산출방식으로 계산된 수익률을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 (2) 기준지표 : 매분기 시작일에 MSCI ACWI지수의 과거수익률과 KIS종합채권지수의 과거수익률을 가중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설정
- MSCI ACWI지수의 과거수익률 : 직전분기말 기준의 5개년 연평균수익률
 - KIS종합채권지수의 과거수익률 : 직전분기말 기준의 3개년 연평균 수익률
 - 사전지정 운용방법별 연평균 수익률에 적용하는 가중치

사전지정 운용방법	MSCI ACWI	KIS종합채권지수
저위험 1호	25%	75%
저위험 2호	25%	75%
중위험 1호	35%	65%
중위험 2호	35%	65%
고위험 1호	50%	50%
고위험 2호	58%	42%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개인형퇴직연금(개인형) 운용관리계약 부속협정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8. 유의사항

- 2015년 12월 1일부터 금융기관별 개인형 IRP계좌를 1개로 제한하는 1사1계좌가 적용됨에 따라, 농협은행에 개인형 IRP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추가개설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이 퇴직연금에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적립금에 대하여 다른 보호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5천만원까지" (운용되는 금융상품 판매회사별 보호상품 합산) 보호됩니다.
- 개인형IRP에 가입 하였을 때로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되며, 가입 후 만기가 있는 상품(정기예금, 이월보증형보험계약 등)으로 운용방법을 선택한 경우 해당 상품의 만기일로부터 4주가 지났을 때로부터 2주 이내 고객님의 별도 의사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사전지정운용방법에 따라 적립금이 운용됩니다.
- 원리금보장상품의 경우 상품의 만기이전 해지 시 중도해지이율적용으로 수익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관련 법령에 따라 주식형 또는 주식혼합형 펀드의 경우 위험자산으로 분류되어 전체 적립금의 70% 범위 내에서만 운용할 수 있고, 채권형펀드 및 채권혼합형펀드, MMF등의 경우 100%까지 운용(일부상품 제외)가능합니다.
- 지급신청 시 운용상품에 따라 실제 지급금 수령일이 다를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금융상품(위험성, 수익성, 수수료, 해지방법 등)에 대하여 당사로부터 충분한 설명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방법은 향후 세법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연금저축 계약기간 만료 전 중도해지하거나 계약기간 종료 후 연금 이외의 형태로 수령하는 경우 세액공제 받은 납입원금 및 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세율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자산가치 변동>,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간이)투자설명서 및 집합투자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외화자산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등 추가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라 설명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 금융상품을 가입하시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가까운 NH농협은행 영업점 또는 퇴직연금 전용콜센터(1588-5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영업점, 고객센터(1588-5995), 인터넷 홈페이지(https://pension.nonghyup.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